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18

발의연월일: 2020. 9. 10.

발 의 자 : 임이자 · 한기호 · 권명호

한무경 • 박대수 • 조경태

송언석 · 정진석 · 김영식

김형동ㆍ서일준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 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. 최근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 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었으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음.

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의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,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

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4, 제21조의5 및 제27조제2항제1호·제2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장에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4(명단 공개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제1호·제3호 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 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・의결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,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5(출국금지 요청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 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제1호·제3 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

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을 한 후 해당 양 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제2항 중 "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 니한 사람. 다만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- 2.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7조제 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제1호·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 제1항제1호·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	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
및 지원에 관한 법률	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<u><신 설></u>	제21조의4(명단 공개) ① 여성가
	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
	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
	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
	<u>항제1호·제3호에 따른 감치명</u>
	<u>령</u>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
	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
	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
	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.
	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
	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
	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
	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
	<u>주어야 한다.</u>
	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양
	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에
	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・의결
	<u>한다.</u>
	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
	구체적인 내용, 기간 및 방법

<신 설>

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5(출국금지 요청) ① 여 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 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 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 1항제1호·제3호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·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3항 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 관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을 철회하 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

제27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2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 해당하는 사람은

 - 1.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피해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 - 2.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누설한 사람